# 『KB 국민 UP 정기예금』특약

## 제1조 약관의 적용

"KB 국민 UP 정기예금(이하'이 예금'이라 합니다)"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## 제 2 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.(단, 금융기관은 제외)

#### 제 3 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예금으로 합니다.

## 제 4 조 계약기간

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2 개월로 합니다.

#### 제 5 조 저축방법

이 예금은 신규시 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 고객은 300 만원 이상, 법인 및 임의단체는 3,000 만원 이상을 예치하여야 합니다.

## 제 6조 만기이율

이 예금은 신규가입일 영업점 및 KB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예치기간 구간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
#### 제 7 조 일부인출 및 중도해지이율

이 예금을 일부인출 하거나 중도해지하는 경우, 월단위 예치기간은 제 6 조에서 정한 예치기간 구간별 이율을 적용하며 월단위 미만 예치기간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 국민은행 홈페이지에\_게시된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합니다.

#### 제 8 조 만기후이율

이 예금을 만기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,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는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된 만기후이율을 적용합니다.

#### 제 9 조 우대이율

이 예금의 예금주가 개인(개인사업자 포함)으로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,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우대이율을 셈한 이자를 만기에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.

아래의 ①항 및 ②항에 의한 우대이율은 신규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계좌의 월단위 예치기간에만

적용하며, ③항에 의한 우대이율은 신규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된 계좌의 월단위 예치기간에만 적용하며 ①항 또는 ②항과 중복적용되지 않습니다. 또한, 월단위 미만 예치기간 및 만기후 예치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
- ① 이 예금 신규일의 다음 달 말일 기준으로 적립식예금(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. 기타 주택청약 관련예금 및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제외) 잔액의 합이 30만원 이상 이거나, 외화예금원화환산 잔액의 합이 10만원 이상인 경우. 이 때 외화예금 잔액은 이 예금 신규일의 다음 달 말일 (해당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)에 은행이 1회차로 고시한 기준환율에 따라 환산합니다.
- ② 이 예금 신규일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 예금주의 KB 국민카드(체크카드 및 KB 국민비씨카드 포함, 선불카드 및 기업카드제외) 이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
- ③ 이 예금 신규일의 전월 달 초일부터 이 예금 신규일 당일까지 KB 국민재형저축(고정금리형 포함)을 해지한 이력이 있는 경우
- 이 예금의 신규 시 금리우대쿠폰을 적용한 경우 쿠폰 우대금리를 기본이율에 가산합니다.
- ※ 금리우대쿠폰 우대금리는 신규 당시 적용한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르며, 세부 사항은 금리우대쿠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※ 금리우대쿠폰은 신규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## 제 10 조 예금의 일부인출

이 예금 신규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된 계좌는 계약기간 중 만기(또는 중도)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10만원 이상 원단위로 일부인출을 할 수 있으며, 일부인출 후 잔액은 100만원 이상을 유지하여야합니다.

## 부 칙

- 이 약관은 2020.03.06 부터 적용합니다.
- 이 약관은 2020.10.12 부터 신규가입고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- 이 약관은 2022.03.08 부터 시행합니다.